

#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새마을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(당초)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,  
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,  
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운영
- (변경)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,  
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,  
청년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

나. 용어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5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경상북도 새마을운동  
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-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##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
4.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6.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

제5조 중 “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) <u>시장</u>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, 새마을사업 추진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, <u>기타</u>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</u></p> <p>4. <u>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</u>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, 「<u>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, 「<u>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3조(지원)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그 밖에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</u></p> <p>4. <u>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</u>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준용) -----</p> <p>----- 「<u>구미시 사무위탁 조례</u>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# 관계법령

## □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## □ 「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생략
6. “청년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 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새마을사업)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새마을운동을 유지·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~ 9. 생략
10.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
11. 새마을운동 계승·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대상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
12. 생략

## □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3조(지원) 제3호, 제4호, 제6호
  - 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
  -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  -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 사회 혁신활동 사업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 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,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거나 재정의 기술적·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- 새마을과 새마을봉사팀 이혜숙(☎480-6802)

소 관 부 서		새 마을 과
입 안 자	과 장	조 희 태
	팀 장	배 영 아
	담 당 자	이 혜 숙 (480-6802)